

예탁계약서

한국예탁결제원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소마젠 인코퍼레이티드
(Psomagen, Inc.)

KDR 소유자
(Holders of KDR)

2019 년 10월 28일

< 목 차 >

| | |
|--|---------------|
| 제1장 총 칙 | - 1 - |
| 제1조 용어의 정의 | - 1 - |
| 제2조 이 계약의 해석 | - 4 - |
| 제3조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의 진술과 보증 | - 4 - |
| 제2장 원주식의 예탁 및 KDR의 발행 | - 5 - |
| 제4조 원주식의 예탁 및 KDR 발행의 신청 | - 5 - |
| 제5조 원주식의 예탁방법 | - 6 - |
| 제6조 KDR의 발행 | - 6 - |
| 제7조 KDR의 발행 제한 | - 6 - |
| 제8조 발행증명서류의 발급 | - 7 - |
| 제9조 KDR 승인총수 및 그 초과시의 처리 | - 7 - |
| 제3장 KDR 양도, 원주식전환 등 | - 8 - |
| 제10조 KDR의 양도 등 | - 8 - |
| 제11조 KDR의 해지 및 원주식으로의 전환 | - 8 - |
| 제12조 KDR의 원주식 전환제한 | - 9 - |
| 제13조 KDR과 원주식의 전환비율 | - 9 - |
| 제4장 소유자명부 등 | - 10 - |
| 제14조 소유자명부등의 작성 및 관리 | - 10 - |
| 제15조 사무일정의 협의 | - 10 - |
| 제16조 KDR기준일의 설정 등 | - 11 - |
| 제17조 원주식기준일 | - 12 - |
| 제18조 주주총회 | - 12 - |
| 제19조 신주발행 | - 13 - |
| 제20조 배당금 등의 분배 | - 14 - |
| 제21조 무상증자 | - 14 - |
| 제22조 기타 사무일정 | - 15 - |
| 제5장 소유자의 의무 | - 16 - |
| 제23조 원주식의 예탁 및 KDR의 원주식 전환 시 진술 및 보증 | - 16 - |
| 제24조 소유자의 법규준수 | - 16 - |
| 제25조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 - 17 - |
| 제26조 원천징수 및 세금 | - 17 - |
| 제27조 자료 및 기타 정보의 제출 | - 18 - |

| | | |
|------------|---------------------------|---------------|
| 제6장 | 예탁주식 관련 권리의 행사 | - 19 - |
| 제28조 | 권리자 및 권리행사의 방법 | - 19 - |
| 제29조 | 현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등의 분배 | - 19 - |
| 제30조 | 원주식의 분배 | - 19 - |
| 제31조 |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 | - 20 - |
| 제32조 | 신주인수권의 불행사 | - 21 - |
| 제33조 | 기타 자산의 분배 | - 21 - |
| 제34조 | 의결권 등 행사신청 | - 22 - |
| 제35조 | 공익권 등의 행사 | - 22 - |
| 제36조 | 예탁주식의 교체 등 | - 23 - |
| | | |
| 제7장 | 예탁기관 · 보관기관 · 발행회사 | - 23 - |
| 제37조 | 예탁기관의 의무 | - 23 - |
| 제38조 | 보관기관 선임 및 책임 | - 24 - |
| 제39조 | 소송의 제기 등 | - 24 - |
| 제40조 | 발행회사의 의무 | - 24 - |
| 제41조 | 불가항력 | - 26 - |
| 제42조 | 면책 | - 26 - |
| 제43조 | 예탁기관의 책임부인 | - 27 - |
| 제44조 | 예탁기관 수수료 | - 28 - |
| | | |
| 제8장 | 계약의 해지 | - 28 - |
| 제45조 | 계약의 해지 | - 28 - |
| 제46조 | 해지시의 처리 | - 29 - |
| 제47조 | 예탁계약 해지의 효과 | - 30 - |
| | | |
| 제9장 | 기타 | - 30 - |
| 제48조 | 환전 | - 30 - |
| 제49조 | 소유자에 대한 이 계약의 적용 | - 31 - |
| 제50조 | 계약의 변경 | - 31 - |
| 제51조 | 통지 | - 31 - |
| 제52조 | 공고, 공시 및 통지 | - 32 - |
| 제53조 | 분쟁해결과 준거법 | - 32 - |
| 제54조 | 약정 외 사항의 처리 | - 33 - |
| 제55조 | 양도 금지 | - 33 - |
| 제56조 | 복본 | - 33 - |
| 제57조 | 일부무효 | - 33 - |
| 제58조 | 언어 | - 33 - |

예탁계약서

이 예탁계약(이하 “이 계약”)은 2019년 10월 28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1.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며 1330 Piccard Drive, Suite 205, Rockville, Maryland 20850에 등록지를 두고 있는 소마젠 인코퍼레이티드(Psomagen, Inc., 이하 “발행회사”);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기관”); 및
3. 증권예탁증권(Korean Depository Receipts, 이하 “KDR”)의 소유자(아래에서 정의됨).

전 문

발행회사는 미합중국(이하 “원주식 발행지”)에서 메릴랜드주 법률에 따라 원주식(아래에서 정의됨)을 발행한 회사로서,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원주식을 기초로 하여 KDR을 발행하게 하고자 한다.

예탁기관은 이 계약의 조건과 2019. 9. 16. 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기타 하위 법규 포함) (이하 “법”),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이하 “KDR 발행규정”)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KDR을 발행하고자 한다.

이에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좌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로서 그 관리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 영업일”이라 함은 KDR 발행규정 제3조의3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을 말하고,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이외의 날로써 대한민국과 원주식 발행지 모두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3. “발행인관리계좌”라 함은 주식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발행인 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4. “발행인관리계좌부”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발행인 별로 전자등록 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수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5. “발행등록사실확인서”라 함은 KDR이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 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 “배당금 등”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원주식에 대하여 분배하는 배당금, 분배금 또는 배당주식, 무상주식, 기타 자산을 말한다.
7. “보관기관”이라 함은 이 계약 제38조에 따라 선임, 변경 또는 추가된 예탁기관의 대리인을 말하고, 보관기관의 하위보관기관(sub-custodian)을 포함한다.
8. “소유자”라 함은 전자등록 된 KDR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9. “소유자명부”라 함은 KDR 발행규정에 따라 예탁기관이 작성 관리하는 KDR 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10.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명칭을 불문하고 발행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가 그 자격에 기초하여 지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예탁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하위 법규 포함, 이하 “자본시장법”), 법, KDR 발행규정 및 이 계약에 따라 KDR을 발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2.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에 따라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3. “예탁주식” 이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에 예탁되거나 예탁된 것으로 간주되는 원주식(아래에서 정의됨)을 말한다.
14. “외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 이외의 통화를 말한다.
15. “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를 말한다.
16. “원주식”이라 함은 발행회사에 납입이 완료되어 유효하게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다만,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유 등으로 원주식이 교체되는 경우, “원주식”은 그 교체되는 주식을 말한다.

17. “원주식 기준일”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 신주인수권의 부여, 배당금 등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원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일을 말한다.
18. “주식등”이라 함은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써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KDR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포함한다.
19. “전자등록”이라 함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0. “전자등록계좌부”라 함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21. “전자등록기관”이라 함은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고, 이 계약상 예탁결제원을 의미한다.
22. “전환제한기간”이라 함은 원주식의 예탁에 의한 KDR의 발행 및 KDR의 원주식으로의 전환을 제한하기 위해 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23. “제세공과금 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이 법규, 조례, 규정 등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부과금, 공과금(공공요금 포함) 등을 말한다.
24. “KDR”이라 함은 예탁기관에 예탁된 발행회사의 원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예탁기관이 이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25. “KDR 기준일”이라 함은 예탁기관이 KDR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날을 말한다.
26. “KDR 승인총수”라 함은 이 계약서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KDR의 한도로서 발행회사가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7. “KRX”라 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동 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를 말한다.

제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해석된다.

1. 이 계약의 별첨과 KDR 발행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이 계약(별첨 포함)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계약에서 언급된 법규는 그 법규의 개정법규 또는 후속법규를 포함하며, 그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명령, 규정, 고시, 규칙 또는 조례 등 하위 규정을 포함한다.
4. 이 계약서에서 언급된 문서는 그 문서의 변경·보충·교체된 내용 또는 문서를 포함한다.
5. 이 계약서에서 당사자에 관한 언급은 그 당사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6. 기한 또는 기간의 말일이 영업일 또는 대한민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기한 또는 기간은 다음 영업일에 도래 또는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의 진술과 보증

- ①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계약체결일 현재 및 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설립지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회사이며, 발행회사는 양호하게 존속하고 있다.
 2.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 능력 및 자격을 갖추고 있다.
 3. 이 계약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자는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을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이고,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서 예정하는 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4.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의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예정된 거래의 이행은 관련 법규, 정관 또는 설립문서의 내용, 또는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 또는 협정 등에 위반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
 5. 발행회사가 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유효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6.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계약의 효력 또는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속 중인 소송 또는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의 도산,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이 알기로 그와 같은 소송 또는 절차 등이 임박해 있지 않다.
 7.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의 이 계약 체결 및 이 계약에서 예정된 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의 승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i)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승인이 이미 취득 또는 이행되었거나, (ii)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거나 중대하게 지연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원주식이 적법·유효하게 발행되었고, 원주식은 주금이 전액 납입 완료되었다.
- ② 발행회사는 제1항의 진술 및 보증 이외에 이 계약 및 이 계약의 일부가 되는 예탁기관의 KDR 발행규정을 예탁기관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독립적 법률자문인과 함께 검토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제2장 원주식의 예탁 및 KDR의 발행

제4조 원주식의 예탁 및 KDR 발행의 신청

- ① 발행회사는 새로 발행되는 원주식을 기초로 발행될 KDR의 소유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원주식을 예탁기관에게 예탁함으로써 KDR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예탁기관이 정하는 KDR 발행신청서
 2. 기타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 ② 기발행 원주식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원주식을 예탁기관에게 예탁함으로써 KDR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정하는 KDR 발행신청서
2. 기타 위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제5조 원주식의 위탁방법

- ① 이 계약 제4조에 의한 원주식의 위탁은 보관기관에 계좌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주식 발행지의 법규에 의해 계좌대체가 허용되지 않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주식의 주권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보관기관이 제1항에 따라 원주식을 위탁 받은 경우, 위탁기관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수령한 위탁기관은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발행회사에게 당해 원주식을 위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의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할 것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식 발행지의 법규에 따라 권리행사에 있어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이 조에 따른 원주식의 위탁, 명의개서 및 등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주식을 위탁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④ 위탁주식은 위탁기관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제6조 KDR의 발행

- ① 보관기관이 이 계약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원주식을 위탁받아 위탁기관에게 통지한 경우, 위탁기관은 지체없이 KDR을 발행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실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주식이 위탁되기 전 또는 보관기관이 그 위탁을 통지하기 전에도 KDR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1증권 미만의 KDR은 발행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에 따라 KDR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은 전자등록계좌부에 KDR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소유자는 직접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위탁기관에게 KDR 실물증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KDR의 발행 제한

- ① 위탁주식이 KDR 1증권의 기초가 되는 수 미만인 경우, 위탁기관은 (i) 이에 상응하는 위탁주식을 KDR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자 또는 원주식을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거나, (ii) 예탁기관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예탁기관의 수수료 및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KDR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자 또는 원주식을 예탁한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주식의 예탁 또는 KDR의 발행을 거절할 수 있다.

1. 전환될 KDR이 1증권 미만인 경우(1증권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원주식의 예탁으로 발행되는 KDR을 포함한 KDR의 총수가 KDR 승인총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원주식을 예탁하고 KDR의 발행을 청구하는 자가 이 계약 제4조의 서류 또는 제44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원주식의 명의개서 제한 또는 계좌대체 제한 등의 사유로 원주식의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
5. 전환제한기간 중인 경우
6. 예탁기관에 대하여 원주식의 예탁 또는 KDR의 발행을 제한·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정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정관, 관련 법규, 발행회사에 대한 법원 또는 정부의 명령, KRX, 원주식 발행지의 거래소 또는 전자등록·청산·결제기구(대한민국 및 원주식 발행지의 전자등록·청산·결제기구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8. 기타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실무처리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발행증명서류의 발급

- ① 발행회사가 KDR 발행 내역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KDR의 발행증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KDR 승인총수 및 그 초과시의 처리

- ① 이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KDR의 총수가 당시 KDR 승인총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그 초과분의 발행을 보류하고(어느 발행신청의 일부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 25일 이내에 KDR 승인총수를 변경하고 그 변경사실을 예탁기관에게 통보하거나 이를 변경하지 않을 의사를 예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예탁기관은 발행회사가 KDR 승인총수를 변경하여 예탁기관에게 이를 통보할 때까지 KDR 승인총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기초가 되는 원주식의 예탁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장 KDR 양도, 원주식 전환 등

제10조 KDR의 양도 등

- ① KDR의 양도는 해당 KDR에 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 ②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자는 해당 KDR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 KDR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KDR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의 성명 등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1933년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라 제정된 규정 S(Regulation S)에 의하여 요구되는 KDR의 양도제한 요건은 이 계약의 별첨 2로 첨부되어 있으며, 이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1조 KDR의 해지 및 원주식으로의 전환

- ① 소유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KDR을 해지하고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예탁기관이 정하는 원주식 전환신청서
2. 기타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에 KDR의 처분제한을 요청하고,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수량의 예탁주식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한다.
- ③ 예탁기관이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현금 또는 재산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2조 KDR의 원주식 전환제한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DR의 원주식 전환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환될 원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1주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한다). 다만, 발행지의 법규 및 발행회사의 정관(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모두 포함)상 1주 미만의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제11조 제1항의 서류 또는 수수료 및 거래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원주식의 계좌대체 제한 등의 사유로 원주식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4. 전환제한기간 중인 경우
5. 예탁기관에 대하여 원주식의 전환을 제한·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정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6. 발행회사가 정관, 관련 법규, 발행회사에 대한 법원 또는 정부의 명령, KRX 또는 전자등록·청산·결제기구(대한민국 및 원주식 발행지의 거래소 또는 전자등록·청산·결제기구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7. 기타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실무처리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원주식과 KDR의 전환비율

- ① 원주식 1주는 KDR 1증권의 비율(이하 "전환비율")로 전환된다.
- ②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전환비율은 조정 전 원주식 또는 KDR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발행회사는 이 조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조정사실과 조정된 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장 소유자명부 등

제14조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 ① 예탁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 하여 소유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유자번호, 소유자의 명칭, 소유자의 실명확인번호 및 주소 등
 2.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거주지국) 및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3. 소유자 별 KDR의 종류와 수
 4. 소유자 통지 연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예탁기관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소유자별 KDR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명칭과 실명확인번호가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는 KDR의 수를 합산한다.
- ③ 예탁기관은 발행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예탁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명부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일정의 협의

-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주식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설정, 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예탁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라 그 계획 또는 일정 등을 예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의 분배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3. 원주식 또는 KDR의 분할 또는 병합
 4. 회사의 합병 또는 상호 변경
 5. 회사분할
 6.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7. 그 밖에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
- ② 원주식 또는 KDR의 발행 또는 기타 사무의 처리 시, 예탁기관은 발행원인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예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라 협의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정하는 협의, 통지 또는 요청시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시한은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16조 KDR 기준일의 설정 등

- ①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와 협의로 정한 날 또는 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 또는 기간)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제15조 제1항 각 호 이외에 발행회사가 법규나 발행회사 정관에 의한 의무, 법원의 명령,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주식기준일을 정하거나 KDR 기준일 설정을 요청하는 때
 3. 소유자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때
 4. 제13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조정한 전환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5. 기타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KDR 기준일은 원주식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한민국

업무 관행 또는 현지 법령 상의 요구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KDR 기준일과 원주식 기준일이 다른 경우, KDR 기준일로부터 원주식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예탁기관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초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이를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주식 기준일

발행회사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의일 이전의 날을 원주식 기준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탁기관과 합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 주주총회

- ① 발행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원주식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또는 정하고자 하는 경우(정관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당해 주주총회의 개최일, 개최장소, 원주식 기준일, 목적사항(의안의 요령 및 결의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및 소유자 통지방법,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다음의 사항 및 의안의 요령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하는 경우,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하여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유자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예탁기관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2.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예탁결제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방법
 3. 소유자가 의결권행사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기일과 그 기일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뜻

-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한국어로 작성된 충분한 수량의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배당금 등의 지급인 경우, 그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원주식 기준일과 KDR기준일은 예탁기관과 사전에 합의된 날로 하여야 한다.
- ⑥ 배당금 등의 지급 이외에 자본감소, 합병·분할 등 회사의 자본변동 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무일정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조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까지의 진행은 이 조에 의하고, 그 후의 진행은 소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한 및 절차에 의한다.

제19조 신주발행

- ① 발행회사가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청약예정일 또는 청약예정기간(신주인수권 부여에 따른 신주발행시 청약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또는 납입예정기간)의 초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새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배정비율, 원주식 기준일, 청약예정일 또는 청약예정기간(청약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납입예정일 또는 납입예정기간 및 납입처,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발행회사는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신주인수권 부여에 따른 신주발행시 청약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또는 납입예정기간) 말일의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2항의 정보 및 신주배정내역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하여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1.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예탁기관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일 또는 행사신청기간 등 행사방법
 3. 일정한 기일(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 대한민국 영업일 이전의 날로 한다)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4.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
 5. 제13조에 의한 전환비율로 인하여 1 KDR당 1주를 청약할 수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는 KDR의 단위
-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신주인수권 부여에 따른 신주발행시 청약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또는 납입예정기간) 초일 20일 전까지 충분한 수량의 신주발행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 배당금 등의 분배

- ①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 등(무상증자인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다)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이사회와 결의로 할 수 있는 때에는 결의일의 익일)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배당금 등의 분배율, 분배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내역, 배당금 등의 지급 또는 교부방법, 원주식 기준일,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 또는 분배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자에 분배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소유자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 무상증자

- ①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무상증자를 위한 원주식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무상증자의 재원,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배정을 및 기타 내역, 단주대금 기준가액 및 지급방법, 과세여부 및 세율,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발행회사는 무상증자를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배정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정내역동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자에 배정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소유자에게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교부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정내역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 사무일정

- ①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무 중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의 사무일정 이외의 사무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기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그 사무일정의 성질,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발행회사는 예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때까지 소유자에게 제2항의 정보와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한국어로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예탁기관은 소유자에게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소유자에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소유자의 권리행사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발행회사는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소유자의 의무

제23조 원주식의 예탁 및 KDR의 원주식 전환 시 진술 및 보증

-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주식을 예탁하거나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한다.
1. 원주식 또는 KDR에 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며, KDR 또는 원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원주식 또는 KDR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예탁기관에게 양도 또는 이전한다.
 2. 원주식 또는 KDR에 대하여 질권을 포함한 담보권 등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
 3. 제3자가 원주식 또는 KDR에 대하여 우선적 매수청구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4. 원주식을 예탁하고 KDR발행을 신청하거나 KDR의 원주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다.
 5. 원주식 또는 KDR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완납하였다.
 6. 원주식 예탁에 의한 KDR발행 또는 KDR의 원주식 전환이 관련 법규 및 발행회사의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해당 정부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였다.
 7. 원주식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하자가 없고 제한이 없다.
 8. 이 예탁계약 및 예탁기관의 KDR 발행규정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원주식의 예탁에 의한 KDR발행 또는 KDR의 원주식 전환에 관하여 이 예탁계약 및 예탁기관의 KDR 발행규정에 구속되며 이를 준수한다.
- ②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은 제1항의 진술 및 보증의 위반을 알게 된 경우, 원주식을 예탁하거나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소유자의 법규준수

- ① 소유자는 KDR 소유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원주식 발행지 및 대한민국의 법규, 발행회사의 정관 및 이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에 의한 원주식의 예탁제한 또는 제12조에 의한 KDR의 원주식 전환제한에 반하여 원주식이 예탁되거나 KDR이 원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자는 원주 또는 KDR의 인수에 의한 예탁 또는 전환 취소 등 원주식의 예탁제한 또는 KDR의 원주식 전환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이 계약에 따라 취하는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소유자는 관련 법규 및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KDR 또는 예탁주식(이에 관한 신주인수권 및 배당금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당해 소유자가 부담한다.
- ③ 소유자는 원주식의 예탁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에게 부과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적시에 납부할 책임을 진다. 예탁기관은 그 지급을 위해 예탁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예탁주식에 대하여 분배된 배당금, 분배금, 원주식, 신주인수권 및 기타 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소유자는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관련 법규 및 이 계약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구시에 소유자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제26조 원천징수 및 세금

- ① 발행회사는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 또는 배당금 등을 분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나 관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는 원주식 또는 KDR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하여 사정 또는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 ③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등을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유자명세를 바탕으로 작성한 소유자명부와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발행회사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예탁기관은 소유자의 거주지 등 소유자명부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 또는 진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④ 발행회사가 원천징수 오류, 법규의 변경 등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납부세액, 과징금 등을 추징받고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그 대납세액을 예탁기관, 예탁결제원 또는 보관기관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 경우 예탁기관,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 또는 보관기관은 발행회사가 계좌관리기관 또는 소유자에게 대납세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원주식의 예탁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에게 부과하는 제세공과금 등(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수수료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등은 제외)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주식 또는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배분 또는 교부되는 주식 등 기타 자산을 처분한 수익으로 이를 충당한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은 현금 분배의 방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유자 중 조세조약에 따른 유리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유리한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그 밖에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에게 제출하여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 및 예탁기관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하지 않은 자 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⑦ 발행회사는 이 조에 따라 소유자를 위하여 관련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를 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예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예탁기관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증명서와 자신이 납입한 제세공과금 납세증명서를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 및 기타 정보의 제출

- ①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재 또는 과거의 소유자에게 (i) 자신의 계산으로 KDR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ii) KDR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번호, 주소, 국적(거주지국) 등, (iii) KDR에 대한 권리의 내용 등 기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에 대하여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기관이 알고 있는 현재 또는 과거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발행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예탁기관은 발행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 ③ 예탁기관은 제1항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KDR의 발행, 예탁주식의 인도, 예탁주식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분배한 배당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를 유보할 수 있다.

제6장 예탁주식 관련 권리의 행사

제28조 권리자 및 권리행사의 방법

- ①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그 소유하는 KDR 수에 비례하여 KDR기준일 설정의 목적이 되는 사무일정에 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 배당금 등(이 계약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순이익)을 수령할 수 있다. 예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권 또는 위임을 제공한다.
- ②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9조 현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등의 분배

- ① 예탁기관은 직접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예탁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예탁기관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과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②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른 분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할 수 없다.

제30조 원주식의 분배

- ① 발행회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배당(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수종의 배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소유자는 현금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금배당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무상증자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행위에 의해서

원주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원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경우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추가로 예탁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 소유자에게 각 소유비율에 따라 귀속시키는 방법
 - 2. 제13조에 의한 발행회사의 전환비율 조정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 3. 예탁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순이익을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1증권 미만의 KDR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그 수량을 모두 합산한 수량에 상당하는 KDR 또는 예탁주식(KDR의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각하여 처분순이익을 현금 분배의 방법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 ④ 제2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예탁주식 또는 KDR을 처분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



제31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

- ① 제19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직접(계좌관리기관이 소유자인 경우)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소유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하고,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약을 하였으나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환전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6항에 의한다)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발행회사가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평등 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이외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정할 수 있다.
- ④ 발행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이외의 통화로 정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의 납입가액을 원화 또는 발행회사가 정한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예탁기관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이를 발행회사가 정한 통화로 환전하여 원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 ⑥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납부한 인수대금이 소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한 수의 원주식 인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소유자로 하여금 그 부족분을 즉시 납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에 한하여 행사한다.
- ⑦ 청약신청과 함께 인수금액을 받은 예탁기관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신주인수권의 불행사

- ① 예탁기관은 관련 법규의 제약, KRX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
 - 2.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유
- ③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이외에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그 뜻과 행사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 ④ 소유자가 제3항에 따라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주식 발행지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환된 원주식의 소유자(KDR의 소유자였던 자)에 대하여 원주식 기준일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KDR기준일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정한 KDR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33조 기타 자산의 분배

- ① 발행회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현금, 원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이외의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기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그 소유한 KDR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가 어렵거나 배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그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순이익을 분배하거나 기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

제34조 의결권 등 행사신청

- ① 제18조 제3항에 의한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는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발행회사의 설립지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예탁기관은 제1항의 의결권행사 신청을 취합하여 보관기관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제13조에서 정하는 전환비율로 인하여 1개의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 1개에 이르지 못하는 의결권 행사신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신청내역을 의안별로 합산하여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표창하게 된 부분에 대해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또는 예탁기관으로부터 위임장을 수여 받아 의결권 등 원주식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환제한기간인 경우 또는 원주식 기준일 이후에 예탁주식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⑥ 예탁기관이 타인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라 행사 신청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발행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예탁기관이 행사한 의결권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기관에게 그 불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5조 공익권 등의 행사

- ①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의결권 이외에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

중 관련 법령 및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라 허용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익권 등”)의 행사 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할 수 없다.

- ② 공익권 등을 행사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발행회사 설립지의 법에 따라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여 예탁기관에 신청한 경우, 예탁기관은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소유자에 그 공익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36조 예탁주식의 교체 등

- ① 예탁주식의 분할·병합·종류변경,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발행회사의 합병·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예탁되는 예탁주식은 이 계약에 의한 예탁주식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KDR의 분배, 1증권 미만의 KDR의 처분 등에 관해서는 제30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주식이전·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예탁기관이 수령하는 주식은 제33조의 방법에 따라 분배한다.

제7장 예탁기관 · 보관기관 · 발행회사

제37조 예탁기관의 의무

- ① 예탁기관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지체없이 발행회사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KDR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계약 체결 시까지 법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법이 시행된 직후 이를 신청한다.
 - 1. 전자등록기관 지정
 - 2.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 ② 발행회사가 정부나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예탁기관은 예탁기관업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 계약서의 사본을 비치하고, 업무취급시간 동안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예탁기관은 발행회사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 보관기관 선임 및 책임

- ① 예탁기관은 원주식의 예탁·보관,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있고, 필요시 교체하거나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보관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예탁, 예탁주식의 권리행사 등과 관련하여 예탁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행위는 예탁기관의 행위로 본다.

제39조 소송의 제기 등

발행회사와 소유자가 예탁주식 또는 KDR과 관련된 소송 등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 등 법적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보전되고 면책증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탁기관의 선택에 따라 관여할 수 있다.

제40조 발행회사의 의무

- ① 발행회사는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이 계약을 공시하여 원주식을 KDR로 전환하는 자 또는 KDR을 인수하는 자로 하여금 이 계약에 구속되고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거나 KDR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적시에 예탁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발행회사는 공시대리인의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취급시간 동안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발행회사의 정관
 - 2. 주주총회의사록

3. 발행회사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 감사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 중 관련 법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4. 발행회사가 원주식 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 통지서, 기타 정보(의결권 관련 정보 포함)
 5. 관련 법규 또는 KRX의 규정에 따라 예탁기관이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되는 사항
- ④ 발행회사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다른 의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KDR의 본질상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신청에 따라 직접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인정하고, 예탁기관이 1인 이상의 대리인을 정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하여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따라 위임장의 공탁 또는 사전통지 등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임장의 공탁 또는 사전통지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1인 또는 수인임을 불문한다)이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위하여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따라 사전통지 또는 기타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사전통지 또는 기타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KDR 관련 사무를 처리할 자(이하 "업무대리인")를 선임하고, 그 위임장 또는 선임계약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대리인 및 그 연락처를 예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DR이 발행되어 있는 동안 업무대리인을 유지하여야 하고, 예탁기관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업무대리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4. 주주총회일은 당해 주주총회를 위하여 예탁기관이 이 계약에 따라 설정한 KDR 기준일로부터 30일 이후 90일 이내의 날 중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허용되는 날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초일(청약절차가 없는 경우 납입일 또는 납입기간 초일)은 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이 계약에 따라 설정한 KDR 기준일로부터 30일 이후 90일 이내의 날 중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허용되는 날로 정하여야 한다.
 6. 발행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 신주의 발행, 배당금 등의 분배를 위한

원주식기준일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예탁기관과 협의하여 원주식 기준일이 KDR 기준일과 일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 하여야 한다.

7. 발행회사는 KDR 발행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KDR의 상장폐지를 신청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의는 소유자 총회의 방법 등으로 얻을 수 있다.

제41조 불가항력

- ①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소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계약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법규에 의한 제한, 법규의 제·개정, 정부 또는 KRX의 조치, 전산망의 장애(해킹을 포함하며,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 ②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의 발생 또는 종료사실을 지체없이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예탁기관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신주발행절차를 연기하기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42조 면책

- ① 예탁기관, 보관기관, 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예탁기관 등")이 이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지시 또는 청구에 따라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예탁기관 등에게 책임,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탁기관 등이 비용(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률자문수수료 및 비용 포함)을 지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 등의 책임을 면책하고, 예탁기관 등에게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및 그들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i) 예탁기관 등의 중과실이나 고의책임,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이 야기되거나 (ii) 그 책임,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 상장신청서에

특별히 사용하기 위하여 예탁기관 등이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제공한 중요 정보의 누락 또는 오기재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i) 예탁기관 등의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ii)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상장신청서에 기재하기 위해 예탁기관 등이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의 허위, 오류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 (iii) 전술한 문서에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를 예탁기관 등이 제공하지 않은 것 또는 (iv) 예탁기관 등의 관련 법규 또는 이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그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이하 “발행회사 등”)에게 책임,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행회사 등이 비용(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률자문수수료 및 비용 포함)을 지출한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 등을 면책하고, 발행회사 등에게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및 그들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 등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책임,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이 야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이 조에 따른 면책을 청구하는 자(이하 “면책대상자”)는 면책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즉시 면책을 행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책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면책의 방법 및 적절한 대응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면책대상자는 면책의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화해 또는 조정을 할 수 없다.



제43조 예탁기관의 책임부인

- ① 예탁기관은 이 계약에서 명시된 보증 이외에 KDR의 투자목적 적합성, KDR과 원주식간 전환가능성 또는 전환기간, 통상의 업무처리시간 이후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처리, 청구 또는 신청접수 시 제공받은 정보의 진위확인 또는 오류내역의 통지 또는 정정, 소유자의 권리에 제한이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없는 사실,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 통지의 도달 또는 충분한 행사신청기간 등 일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발행회사와 소유자는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② 예탁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KDR 투자로 인한 손실, 이익기회 상실, 시장상황으로 인한 KDR의 시세변동 등 이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 결과적, 부수적, 간접적 또는 징벌적 손해 또는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 예탁기관이 그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그 손해 또는 손실의 주장이 계약, 계약위반, 법적 의무 위반, 보증위반, 과실 또는 불법행위 등에 기초하는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발행회사와 소유자는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제44조 예탁기관 수수료

- ①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예탁기관이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예탁기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원주식의 KDR 전환에 따른 수수료: KDR 발행신청서를 제출할 때
 2. KDR의 원주식 전환에 따른 수수료: 예탁주식의 인도청구를 할 때
 3. 청약수수료: 청약신청을 할 때
 4. 기타수수료: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까지
 5. 부대비용: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까지
- ③ 발행회사가 수수료 또는 부대비용을 제1항에서 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탁기관은 납부기한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납된 수수료 또는 부대비용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는 납부할 금액의 12%를 한도로 한다.
- ④ 발행회사 또는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탁기관은 그 신청 또는 지시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장 계약의 해지

제45조 계약의 해지

- ①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이 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1.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합병(소멸사인 경우에 한한다)·분할, 주식이전, 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라 파산절차 또는 합병·분할 이외의 해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이 계약에 의한 중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의무위반 내용 및 이행청구를 받은 후 30일 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그 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5. 제41조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지의사의 통지는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취한 때 또는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하는 발행회사는 그에 관한 서면통지를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발송하여야 하고, 이 때로부터 제1항의 60일 또는 제2항의 30일의 기간을 기산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이 계약은 KDR이 모두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때 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기관이 정하는 시간이 종료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해지된다.

제46조 해지시의 처리

- ①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예탁기관이 따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주식을 KDR로 전환할 수 없다. 다만, KDR은 제2항에서 정하는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예탁기관이 제45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위의 기간 종료 시까지 원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KDR을 처분하거나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분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전환되지 않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분하는 경우, 1주 미만의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원주식을 처분하여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원주식을 처분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일정 기간 내에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뜻
 2.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거나 KDR 또는 원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
 3. KDR 또는 원주식의 처분가격 또는 KDR이 1주 미만의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주식의 처분가격은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임의로 정한다는 뜻
 4. 제3호에 따른 처분 이후에는 처분으로 발생된 이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 ③ 제2항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관은 KDR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또는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예탁기관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소유자를 위한 배당금 지급 등 이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이행, 조치 또는 통지를 중단한다. 다만, 예탁기관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KDR 수량이 잔존하는 동안 소유자를 위하여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분배되는 배당금 등을 계속 수령하여 소유자에게 배분하기로 할 수 있다.

제47조 예탁계약 해지의 효과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그 해지로 인하여 또는 해지 이후에 발행회사 또는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또는 손해(예탁기관이 원주식 또는 KDR을 처분한 가격이 시세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 또는 계약해지 후 또는 처분 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한다)를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이 계약의 해지는 해지 전에 발생된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장 기타

제48조 환전

배당금, 분배금, 매각대금, 인수대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예탁기관이 예탁주식 또는 KDR과 관련하여 수령하거나 분배하는 모든 금전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예탁기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원화 또는 외화로 환전될 수 있다. 환전에 따른 비용 등은 환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소유자에 대한 이 계약의 적용

원주식을 KDR로 전환하는 자 또는 KDR을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는 때로부터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제50조 계약의 변경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합의에 의하여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그 개정내용을 자기의 비용으로 공고(공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51조 통지

- ①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에 대한 모든 통지 기타 의사표시는 아래에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주소, 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아래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주소가 변경되는 당사자는 사전에 그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에 대한 통지 기타 의사표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발행회사: 소마젠 인코퍼레이티드(Psomagen, Inc.)

주소: 1330 Piccard Drive, Suite 205, Rockville, Maryland 20850, U.S.A.

참조: Kyung Mi Kang / 총무책임자(Secretary)

전화: +1-301-251-1007 (Ext.401)

팩스: +1-301-251-2006

전자우편: kang@psomagen.com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07330

참조: 글로벌금융팀장

전화: 82-2-3774-3450

팩스: 82-2-3774-3433

전자우편: kdr@ksd.or.kr

- ② 이 계약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에 의한 통지 기타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통지의 경우, 발행회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직접 또는 대한민국 내 대리인(업무대리인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한국어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통지서의 사본을 위탁기관 및 보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탁기관을 통하여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국내회사가 주주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발송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행사 또는 그 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전에 소유자에게 도달함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 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 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 이 조 제2항 및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요청, 요구, 보고, 동의, 면제나 기타의 문서 또는 서류는 서면(팩스, 전자우편 등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i)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송달수단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수령확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이 확인된 때에, (ii)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그 도달이 확인되는 날에, (iii) 인편으로 또는 속달용역회사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에는 직접 전달된 때에 유효하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공고, 공시 및 통지

-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공고, 공시 및 통지는 발행회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제45조 제4항과 제46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지체 없이 발송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은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발송하기로 할 수 있다.
- ② 공고는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일간지 등에 하여야 하고, 공시는 KRX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하여야 하며, 통지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각각 하여야 한다.

제53조 분쟁해결과 준거법

- ①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등은 대한민국 법률(국제사법은 제외)에 따라 해석 및 규율된다.
- ② 이 계약의 해석상 이견,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하 “분쟁”)은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예탁기관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54조 약정 외 사항의 처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5조 양도 금지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이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청구권은 그렇지 않다.

제56조 복본

이 계약은 수통의 복본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본들이 합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을 구성한다.

제57조 일부무효

이 계약 일부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당해 규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제58조 언어

이 계약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이 계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도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

